

4. 주택공제조합 보증규정시행세칙중 개정세칙

자료제공 : 주택사업공제조합

보증규정시행세칙중개정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4조 제2호 및 제63조 제2호 중 “10일 이내에”를 “7일 이내에”로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.

제54조 제3호 중 “10일 이내에 공급계약자명단을 청구(모사전송에 의한 수신도가능하다)한다”를 “7일 이내에 공급계약자명단을 청구한다”로 한다.

제54조 제4호 및 제63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조합원이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거래정지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63조 제3호 중 “10일 이내에 임대계약자명단을 청구(모사전송에 의한 수신도가능하다)한다”를 “7일 이내에 임대계약자명단을 청구한다”로 한다.

제112조 중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3항을 신설하며,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.

- ① 조합원이 주택건설부지매입보증 신청시에는 담보규정에서 정하는 담보를 조합에 제공토록 하거나 당해 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보증을 취급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한국토지공사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지적미정리 택지의 경우에는 부지공급자가 협약(별지서식 보 제44-2호)을 체결하고 보증을 취급할 수 있으며, 부지공급자가 협약체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각서(별지서식 보 제44-3호)와 토지소유권에 대한 권리 및 토지매매 대금환급금 양도통지서(별지서식 보 제44-4호)를 제출받고 보증을 취급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의거 부지매입보증을 받은 조합원이 주택분양보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 51조의2의 규정을 이행하는 조건으로, 주택임대보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

대한 임대계약금과 국민주택기금을 부지매입보증 해제시까지 조합이 관리하는 조건으로 이사회 의결을 받아 제2항의 조치를 철회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8년 10월16일부터 시행한다.

<별첨 1>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<p>제54조 추가징구서류 보증서 발급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징구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공급계약마감일로부터 <u>10일 이내</u>에 “공급계약자명단”을 징구한다. 다만, 명단제출을 해태할 경우에는 업무거래 정지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</p> <p>3. 미공급세대를 추가분양할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<u>10일 이내</u>에 공급계약자명단을 징구(모사전송에 의한 수신도 가능하다)한다.</p> <p>(신설)</p>	<p>제54조 추가징구서류 보증서 발급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징구한다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<u>7일 이내</u>에 ----- (당서삭제)</p> <p>3. ----- ----- <u>7일 이내</u>에 공급계약자명단을 징구한다.</p> <p>4. 조합원이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거래 정지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</p>

현 행	개 정 (안)
<p>3. 미공급세대를 추가임대할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대계약자명단을 징구(모사전송에 의한 수신도 가능하다)한다.</p> <p>(신설)</p> <p>제63조 추가징구서류 보증서 발급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징구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임대계약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“임대계약자명단”을 징구한다. 다만, 명단제출을 해태할 경우에는 업무거래정지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</p> <p>제112조 보증취급방법등</p> <p>① 조합원이 주택건설부지매입보증 신청시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에 의하여 협약(별지서식 보 제44호, 제 44-2호)을 체결하도록 하고, 당해부지에 대한 사용승락 또는 소유권 이전시에는 당해 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규정에서 정하는 담보를 조합에 제공토록 하여야 한다. 한국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지적미정리 택지의 경우에는 협약체결 및 담보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.</p>	<p>3. ----- ----- 7일 이내에 임대계약자명단을 징구한다.</p> <p>4. 조합원이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</p> <p>제63조 추가징구서류 보증서 발급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징구한다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7일 이내에 ----- ----- (단서 삭제)</p> <p>제112조 보증취급방법등</p> <p>① 조합원이 주택건설부지매입보증 신청시에는 담보규정에서 정하는 담보를 조합에 제공토록 하거나 당해 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보증을 취급하여야 한다.</p>

<별첨 2> (별지서식 보 제44-3호)

양도각서

본인은 귀조합의 보증을 받아 아래 부지를 매수함에 있어 본인이 부도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귀조합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지의 소유권에 관한 일체의 권리 및 부지 공급계약 해제의 부지매매대금의 환급금을 귀조합에 양도함과 아울러 귀조합의 일체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.

- 아 래 -

부지공급자 :

부지내역 :

첨부 부지공급계약서 사본 1부

양도인 인감증명서 1부

19

양도인 주소

상 호

대표자

(인)

인감대조필

주택사업공제조합 귀중

